문서번호	감사법무담당관-3201
결재일자	2021. 04. 05.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법무담당관	부시장	시장	
신동한	김종수	이한복	이건호	2021. 4. 5. 김홍장	

협조	인사팀장	교육	자치행정과장	정본환
	조사팀장	김현영	서무후생팀장	교육

2021년 당진시 적극행정 실행 계획

2021. 3.

당 진 시
(감사법무담당관)

Ⅰ 그 동안 추진상황 및 성과

1. 그 동안 추진상황

□ (2019년은)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을 통한 위원회 구성·운영, 인사상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소극행정 예방 등 제도구축을 완료하고 공직사회 붐업 촉진

□ (2020년은) 현장의 제도 활용을 촉진하면서 국민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등 참여의 틀을 새롭게 도입함과 동시에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일괄 확대, 사전컨설팅 활용 실적 증가 등 적극행정제도 내실화

□ (한계) 코로나19 대응, 당진형 뉴딜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속에 주요정책이 시민에게 체감되는 성과창출의 중요한 시점에 있으나, 기존의 관행과 선례를 중시하는 업무행태 잔존

2. 지난 2년의 성과

□ (`19년, 구축) **적극행정 본격 추진의 첫해**인 ’19년, 적극행정을 최초로 **제도화**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추진

제 도 화	▲「당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당진시 자체감사규칙」 개정(적극행정 면책 규정)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적극 활용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문화확산	▲우수사례 공유 ▲기관장 독려 ▲우수공무원 선발·포상

□ (`20년, 확산) **코로나19 현장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표100% 설정, 삽교천 수문 열어 당진천 범람위기 해소 등 **적극행정 제도를 내실 있게 활용**

제도보완	▲「당진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침」 및「당진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정
문화확산	▲기관장 독려(주요업무보고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포상(충남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 장려)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423명) ▲적극행정 사례 공유(16건) ▲사전컨설팅 적극활용(5건) ▲우수공무원 선발·포상(희망부서 전보, 교육우선 배정)

Ⅱ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향

기본방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목 표 시민이 체감하고 공직자가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추진과제	정부합동 시달과제	**[1분야 3개 과제]** ①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②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실적 및 파급 효과성 ③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
	적극행정 자체과제 발굴	**[과제 발굴 · 관리]** ① 발굴대상 : 소극행정을 포함한 4대분야 시정 주요 핵심과제, 법제, 정책(사업) 등 ② 대상부서 : 담당관·국·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소극행정 엄정 조치	**[공직자 소극적 행태 개선]** ① 소극행정 혁파 : 특별 점검반 구성, 부조리 집중 단속 ② 소극해정 예방시스템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③ 소극행정 불이익 처분 강화 : 승진·승급 제한 등 인사관리
	추진상황 점검 · 환류	**[체계적 과제 관리 · 문제점 해소]** ① 추진상황 점검 : 시달·발굴과제 추진상황 점검(서면) ②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소 : 적극행정 활성화 ③ 중앙정부 등 평가 대응 : 우수사례

Ⅲ 2021년 적극행정 추진계획

1. 정부합동 시달 과제 추진

□ 평가방향 :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대상 평가, 시상, 감사 등을 **간소화하여 시행**

☞ ('21년)적극행정 평가 지표 통합·단순화 및『**지역혁신평가**』**와 한시적 통합 운영**

□ 과제 주요내용(10점)

연번	과 제 명	주요 내용	배 점
1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운영 현황	- 주민안전, 장기 미해결 과제, 규제애로 해소 등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사안에 대해 적극적 심의를 통해 신속한 쟁점해결 및 적시 대응 여부 평가 -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추진, 감사원에 면책 건의 요청 등 심의·의결 현황 평가	2
2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실적 및 파급효과성	-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하여 기관의 갈등 및 장기·집단 민원 과제 등을 신속히 해결한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발굴·평가 ※ 시.도, 시.군.구 공통: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행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행안부·인사처) 등 입상한 우수사례 만점(4점) 처리 ※ 시·군·구: 시·도 주관 규제혁신,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 입상한 기초 자치단체를 만점 처리	4
3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	- 우수공무원 선정실적(2) : 반기별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자체 선발 노력도와 적정성 - 인센티브 부여실적(2) : 기관별 자체 인센티브 부여기준 준수 및 부여 실적	4

2. 적극행정 자체 과제 발굴

□ 발굴대상 및 목표

○ 대상부서 : 담당관,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 발굴대상

- 민선7기 '시정비전 및 목표'와 연계하여 부서별 주요 업무, 현안 과제 등에서 적극행정 중심 실천과제 발굴
-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민체감도가 높은 현안 중심으로 과제 선정

① 그동안 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②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③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④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발굴목표 : 담당관 각1건, 국 4건, 직속기관 2건, 읍·면·동 각 1건

3.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소극행정 엄정 조치

○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다. 부작위 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및 승급 제한기간 6개월 가산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타 직위 전보, 성과평가·승진 시 불이익 등 인사조치 실시
- 관리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징계 외 성과평가·성과급 등을 제한하여 관리책임 강화

○ 복무감찰과 병행한 정기적인 소극행정 점검으로 상습 사례에 대하여 엄정 조치 및 제도개선

○ 적극행정 사례 교육과 병행한 전부서 직원교육 실시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 민원인이 지정한 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소극행정 민원 처리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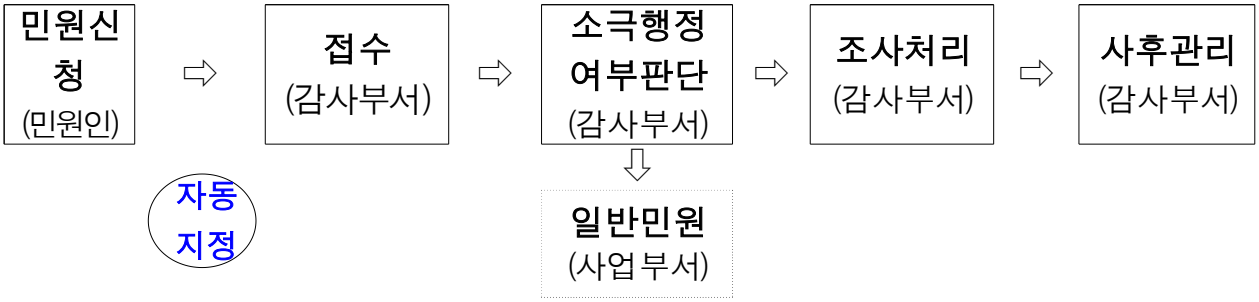

※ 「민원처리법 시행령」제17조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예시)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철저

- 신고자 신분 비밀 누설시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관련법령 : 「부패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민원처리법」 등

-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 필요

4. 추진상황 점검 및 환류

□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환류(평가대응)

○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

○ 점검주기 : 분기별(서면점검 / 3개 시달과제 및 자체 발굴 과제)

○ 점검방법 등

- 시달과제 및 발굴과제 서면 점검
- 향후 분기별 이행 상황 점검 및 보완·개선 추진

○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모색 및 개선

* 과제 추진 상 문제점, 우수사례 및 미흡사례 발굴, 홍보 등

○ 충청남도 적극행정 이행상황(시달과제) 등 점검, 상급기관 평가 대응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 2회(상·하반기)

○ 선발대상 :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탁월한 성과 찰출 또는 창의적·도전적 정책추진으로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된 자, 기타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선발기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 인센티브 부여(자치행정과 별도 방침보고)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S, 근평가점, 대우공무원 선발 및 근속승진 기간단축, 포상휴가, 희망전보 등

○ 사례 공유 및 확산 : 언론보도 등 내·외부망 공개

Ⅳ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1.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 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귀속 시키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장 직접 처리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 실무자의 관여 가능성이 낮은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하여 실무진을 보호함으로써 안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은 실무진*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5)

* 일반적으로 직위를 갖지 않는 5급(기초 6급) 이하 공무원 의미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 부서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의미

* 단,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

2.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사전컨설팅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선택가능성을 부여하고 의사결정 지원 창구를 다양화하며, 공무원을 중첩적으로 보호

○ 의견제시 효과

- **(징계 등 면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상급기관 감사 등)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면제
- **(징계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면책 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3. 사전컨설팅 제도

○ **(개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절차)** 자치단체는 소속기관·부서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중앙행정기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 **(효력)** 감사원·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의 관계 >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쪽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 가능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 효력 발생

▸자체감사기구와 적극행정 전담부서 간 신청 안건 및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감사부서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4. 적극행정 면책 제도

○ **(징계요구 등 면책)**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감사원법」 제34조의 3)
- 정부합동감사 등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
- 자체감사의 적극행정 면책(「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

○ **(징계 등 면제)**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제한하고, 징계의결 전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심의절차를 확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적극행정 면책 요건	
1호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 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 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V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실행(4월중)

○ 적극행정 사례 교육 실시(소극행정 병행)

○ 적극행정 자체 과제 발굴(4월 限)

○ 분기별 이행과제 추진상황 점검(6월 ~ 11월)

○ 소극행정 행태 점검(6월말, 10월중 예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공무원 선발(상・하반기 / 자치행정과)

붙임 (서식)적극행정 사례 제출 1부. 끝.